

## 언론의 성적 선정적 보도와 여성의 인격권

조 연 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 1. 문제제기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공적인 현상을 보도하고 논평해 줌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주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선정주의(sensationalism)이다. 이것은 언론이 다루어야 할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조명하기보다는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선정적인 저널리즘으로 스포츠 신문들을 손꼽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 들조차도 같은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 소위 정론지와 황색 언론지 간에 구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1년 황수정 마약복용 사건을 일제히 선정적으로 다루었던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신문의 품위 훼손이란 이유로 ‘공개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도 48개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허친슨 위원회의 보고서(1947)에서는 언론이 선정적인 사건 보도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시민 각자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토론을 언론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언론의 선정주의의 핵심은 언론이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으로서, 한마디로 작위와 부작위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 미풍양속을 파괴하거나 풍기문란을 조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언론의 선정주의적인 보도로 인해, 한 개인의 이익과 언론의 공적 기능의 이익 간에 비교형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던 최근의 사례로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를 지적할 수 있다.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문화일보가 기사와 사진을 처음 보도한데 이어 다른 신문들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톱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학력 위조와 횡령 혐의, 미술계의 부조리 등 사건의 핵심과 누드 사진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개인의 사적인 사진공개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

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여성을 선정적 소재로 취급,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접근의 대상을 여성 연예인에서 전문직 여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선정적으로 접근, 해당 여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언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선정주의적인 언론보도를 놓고, 성적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가 될 뿐, 여성이란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에 대한 법제도적인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적 표현이나 성관계를 이용한 언론보도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시켜 그것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여성

### 1) 언론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

미디어의 선정성은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의 내용이 특정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고 도덕적, 심미적 감성을 자극하여 실제의 사실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고 과장하는 일련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지칭하는 개념이다(이은택, 2000, p. 14). 선정주의는 전율과 긴장감을 제공하고 불건전하면서 유해한 감정을 불

사건 당사자인 여성을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선정적으로 다루  
인격권 훼손하는 사례  
계속 반복돼

러일으킬 뿐 아니라, 공포, 범죄, 재난, 성추문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탐욕에 호소하려는 속성을 지닌다(Tannenbaum & Lynch, 1960, p. 382). 이런 속성은 소위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색언론이란 19세기 말 경쟁적이고 침투력이 강한 상업적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서,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대중의 원시적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하는 저널리

즘을 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가 심화됨에 따라 신문이 스스로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에 영합하여 취재하는 행위로서, 미디어의 내용을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우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일컫는다(성동규, 2002).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선정성은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언어, 과도한 노출, 성적인 신체 접촉 등 성(sex)과 관련된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도 저속한 성표현물과 같은 의미에서 도가 지나친 성적 표현의 속성을 선정성이란 용어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선정성의 기준으로 선정적 동작, 신체 노출, 이성간의 신체 접촉을 주로 사용한다(유의선, 조연하, 2000, p. 92). 성표현물은 인간의 성에 관한 행위와 행동을 문자나 영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개별적인 입장 또는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성표현물은 어느 문화에서든, 공공연한 긴장

을 불러일으키거나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법적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이슈를 야기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에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도에서의 선정적인 양태는 소재의 부도덕성과 표현의 자극성 등으로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유홍식, 2003).

하지만 선정주의에 대해 언론보다는 언론이 반영하는 사회제도의 탓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선정주의가 독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론은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Tannenbaum & Lynch, 1960, p. 381).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선정주의는 우리 사회의 집단 관음증이 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게재 소식이 퍼지자, 한때 문화일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 1위로 올랐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넓은 의미이든 좁은 의미이든 언론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무엇을 다루었는가”

와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언론보도의 선정성 판단기준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전자는 기사의 내용과 그 내용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재원의 사용, 제목과 본문의 일치도, 취재원 표시방식 등의 세부기준을 적용시켜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기사가 어떻게 포장되어서 독자에게 전달되는가와 같은 형식적인 차원이다(성동규, 2002). 사실 그동안 미디어의 선정적인 보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많았어도 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주원인은 선정성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선정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의 형식과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선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선정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성적 선정적 보도 소재로서의 여성

현실 속의 여성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디어의 여

성묘사이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묘사가 현실에서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현실에서의 여성문제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에서의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 왔던 부분은 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의 선정적 표현은 통상적으로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쇼에서 자주 관찰되며, 남자보다는 여자를 대상으로, 자극적인 춤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카메라 앵글 조작으로 인해 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의 상품화로 설명되고 있기도 한데, 여성을 소비상품의 대상으로 삼는 환경을 조장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성과 육체를 자신의 것이기보다는 남에게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기 위한 소재로 취급하는 성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했지만, 미디어에서의 왜곡된 여성묘사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김선남(2001)은 텔레비전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폐해로 외모 중심적인 여성관을 강화시키

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공한 연예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클로즈업 장면을 화려하게 연출해냄으로써 연예인의 성공은 연예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외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정적 장면을 통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은 남의 사생활 엿보기를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여성운동에 관한 미국 신문의 프레임 분석에서도, 여성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평등이란 용어를 인용하거나 여성운동 내의 분쟁을 강조하는 반면, 반(反) 여성주의자들은 매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성운동의 목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Ashley & Olson, 1998). 결국 여성운동의 표면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만 상세히 보도하는 신문의 편향된 틀 짓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로, 언론이 여성의 이슈를 보수적이고 젠더 차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성표현물과 미디어의 상업 논리

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현상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성표현물의 과잉 공급 현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설, 영화, 만화 등에서 성에 대한 표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다루는 공적인 소재가 되었다. 매체에 따라 그 수위만 다를 뿐 성에 대한 선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  
해결 위해서는  
객관적 선정성 판단 기준 및  
선정성 수준 측정 척도 개발해야**

정적 표현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성표현물이 만연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미디어 산업에서 성이 갖는 대중성, 둘째,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는 공적 성담론의 범람을 지적할 수 있다(유의선, 조연하, 2000, pp. 77 ~ 80).

먼저 성의 대중성이란 성은 가장 대중적인 소재이며, 따라서 미디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산업적 생존을 위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 본위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성에 대한 선정적 표현의 산업적 매력은 다양한 매체의 성장 기제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예는 VCR, 신문의 소설,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 인터넷의 성인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지상파 TV에서도 여성을 노골적인 신체부위 노출이나 자극적인 동작을 통해 자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성의 대중성이 미디어의 산업적 수익성을 상당 부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성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그동안 감춰져야 하는 사적 비밀 영역으로서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도덕적 관념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 관념에 대한 예술가와 문학인들의 도전과 성개방화 추세로 인해 성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문제는 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상업 메커니즘의 폐해가 크다는 점이다. 이윤 추구를 우선 목표로 하는 상업 메커니즘은 표

현의 자유, 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 다양한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청률, 구독률, 접속률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는 표현의 시장적 성과에 상당 부분 주목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표현 성과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거대 상업 자본주의가 고용한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해 표현물의 대중성 강화가 일정 부분 주도됨은 매체 산업적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매체의 산업적 특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과도한 성표현물이 분별없이 지나치게 유통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또는 시장실패로 시장의 자율 기능이 상실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3.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의 법적 근거 및 사법적 판단

인격권이란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사

람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며, 이에 대한 침해를 민법에서는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는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 할지라도 중대한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sup>1)</sup> 단 언론의 공공성과 개인의 인격권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지는 각 사안에 따라 보도내용 중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衡量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 검토하고 각각의 보호법익의 가치를衡量해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sup>2)</sup> 이렇게 볼 때 헌법적 차원의 인격권 개념은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의 개념인 반면, 민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에서 명시한 인격

권의 개념은 비교衡量 시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들의 권리를 의미한다(이재진, 2006, pp. 16~17).

인격권에는 초상권, 명예권, 생활권, 성명권, 음성권 등이 포함된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용모·자태 등)에 관한 개인의 존중·명예·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다. 여기에는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임병국, 1999, pp. 230~231). 신정아 누드사진 사건의 경우, 누드사진 촬영의 진위여부를 떠나 얼굴 사진으로 인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다.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초상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750조

1) 법원은 “보도기관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공·사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민사지법 1989. 7. 11, 88가합31161)”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대법원 1988. 10. 11, 86다카29.

제1항<sup>3)</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관련법으로는 언론중재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sup>4)</sup>의 인격권 조항에서 초상권을 포함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법은 형법 제307조부터 310조이다.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개념인 사생활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또는 타인에게 알려지기 싫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는 권리이다. 사생활권 관련법은 언론 또는 언론학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관심사에 속하며, 법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Zelzny, 1997, p. 154). 대륙법 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어도 연방법이나 주법을 통해 보호한다. 국내에서도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권을 포괄적이면서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에는 사적 공간 또는 생활에 대한 침범, 감추고 싶은 사적 사실에 대한 공표, 사적 사실에 대한 왜

국민의 호기심 충족과 관음증 해갈이 결코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의 기준되서는 안 돼

곡된 공표 그리고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 있다. 각각의 유형이 서로 다른 법리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유형별로 각기 다르지만, 보도가치성과 동의가 주 면책사유가 된다. 특히 언론이 보도가치성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대상 인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공공

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지에 대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호기심 충족과 관음증 해갈이 결코 정당한 관심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승선, 2005, p. 81).

#### 4. 사례분석

##### :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의 인격권 침해

본고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언론의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보도의 선정성과 인격권 침해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선정성은 공익적 보도가치성, 사실관계 확인여부, 추가 의혹 부풀리기 여부로 판단하였고, 인격권 침해는 침해 가능한 인격권 유형, 침해 가능한 인격권 영역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엇보일 경우, 그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실제 분석 대상은 성관계 비디오 또는 동영상 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O양 비

3)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5조.

디오 사건과 백지영 몰래카메라 사건, 마약음용 및 밀애관계를 다룬 황수정 사건과 성현아 사건, 이태란 섹스 동영상 공개협박 사건, 함소원 섹스 몰래카메라 비디오 협박사건 그리고 최근의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 사건, 아이비 동영상 유포 협박사건 등 모두 8건이다. 분석에서는 특별히 사건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한 선정적인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분석 결과, 해당 사건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모두 보도되었으며, 사건의 주인공들은 연예인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선정성 차원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면서까지 과연 알권리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가를 사건의 전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황수정, 이태란, 성현아, 아이비 사건의 경우, 공익적 보도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마약복용혐의, 폭력, 협박 사건 등의 범죄사건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내연남이나 애인과의 성적 관계나 지극히 사적인 생활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특정 사진을 무단 게재

하는 등 전혀 보도가치성이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역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정적 기법을 채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있어서는 함소원과 신정아 사건의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미확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는 분석대상 모두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섹스비디오나 동영상의 부재를 밝혔음에도 '이태란 섹스비디오 있나 없나', '의혹투성이 아이비 협박 동영상 사건 실체 추적' 등의 제목으로 흥미위주의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였다. 신정아 누드사진 사건의 경우에도 사진 자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찍은 사람은 누구?', '신정아 누드사진, 성 로비 가능성 파문 예고' 등의 자극적인 표제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본래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보도방식을 취했다.

한편 인격권 침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의 왜곡된 공표 유형에 속하는 함소원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감

추고 싶은 사적인 사실을 무단 공표하는 유형에 속했다.

언론보도가 침해할 수 있는 인격 영역을 남녀 간의 성관계와 같은 내밀영역, 일기나 서신, 통화와 같은 비밀영역, 결혼설, 이혼설 등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사(私事)적 영역, 사적인 것을 넘어선 개인의 생활영역인 사회적 영역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고 인식되어야 할 공개적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로부터 얻는 이익과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법익 형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영역이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침해받는 자의 이익보호가 두터워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임병국, 2002). 분석 결과, 모든 사건에서 남녀관계나 성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가 모두 해당되었다. 단 사안에 따라 다른 영역과의 중복 현상을 보이는 사건도 있는데, 이것은 내밀영역에만 속한 사건에 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인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해당 여성이 받게 되는 인격권 침해는 치명적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했던 여성은 매스미디어에서 주로 사건의 피해자 또는 성적인 소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과거 O양의 비디오 사건이나 최근의 신정아 누드사진 파문의 경우를 보

더라도, 남녀가 함께 관련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의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인격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항상 여성이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언론의

횡포로서, 언론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이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되고

〈표 1〉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 공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분석

구 분 사 건 명	선 정 성				인격권 침해			
	보도 언론매체	공익적 보도 가치성	사실관계 확인여부	의혹 부풀리기 여부	피해자 신분	침해 가능한 인격권 유형	사생활 침해 경우 침해 가능한 인격영역	침해 가능한 인격 영역
0양 비디오 사건 (1998)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백지영 몰래카메라 사건 (2000)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황수정 최음제 사건 (2001)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이태란 비디오 사건 (2001)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비디오 미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성현아 엑스터시 사건 (2002)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함소원 비디오 사건 (2003)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미확인	있음	연예인	· 명예훼손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공표	· 내밀영역
신정아 누드사진 보도사건 (2007)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미확인	있음	교수	· 명예훼손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아이비 동영상 사건 (2007)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동영상 미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5. 결론

언론의 선정성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사회에서든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이 다양한 정보제공을 해줌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사회를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언론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기업이란 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매체의 수가 급증하고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언론 환경에서, 선정적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언론으로서의 완벽한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속보성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소재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선정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과연 해당 여성이 받게 되는 인격권 침해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이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

에 입각한 보도원칙을 지키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친슨 위원회의 지적대로 시민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토론을 언론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이 문제는 언론이 처해 있는 전체적인 구조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소외계층에 속하는 여성을 성적 선정적인 보도의 소재로 일삼는 언론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기준이나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다. 현재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금지조항,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조항, 양성평등 조항 등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성에 대한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 성적 표현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청소년 보호나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여성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시민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으로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나 신문 연예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 관행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대응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청자 운동단체 등 시민단체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잣대를 갖고 언론의 내용을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론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언론계 내부에서도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언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 및 법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내 전문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입법상의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통합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성평등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나타난 성불평등적인 요소의 원인이 제작 관행이나 시스템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조직에 여성의 진출을 권장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선남(2001). 방송의 선정성 실태와 그 대처방안, 시청자연대회의 발표문.
- 성동규(2002). 스포츠 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년 봄호, pp. 82~87.
- 유의선·조연하(2000). 방송의 선정성과 법적 규제의 적정범위. 『여의도저널』 창간호, 2000, pp. 76~102.
- 유홍식(200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도의 선정성·폭력성과 디지털 영상조작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3년 여름호, pp. 61~87.
- 이승선(2005). '알게 할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pp. 76~81.
- 이은택(2000). TV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미디어 윤리. '미디어와 성담론: 늘어나는 성이야기', 한국언론학회·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주최 쟁점토론 발제문.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

울: 한나래.

- 임병국(1999).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임병국(2002). 여성 연예인 인격권 침해 사례분석. '방송에 의한 여성 연예인 인권 침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 Ashley, L. & Olson, B.(1998). Constructing reality: Print media's framing of the women's movement, 1966 to 1986.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pp. 263~277.
- Tannenbaum, P. H. & Lynch, M. D.(1960). Sensationalism: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Journalism Quarterly*, 1960 Vol. 37, pp. 381~391.
- Zelezny, J. D.(1997)(2nd).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 and the Modern Media*. Belmont:Wadsworth Publishing Company.